입 법 정 보

2019-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6
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노동부)····· 7
7.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8
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9
1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13
1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3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4
1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5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6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7
2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9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0
2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1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2
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4
29.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24
30.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4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6
3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8
35.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9
3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9
37.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9
3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0
39.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0
40.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1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31
4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3
44. 자동차관리법 제1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5.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5
46.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7

정부입법 예고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6. 3.
- 마감일자 : 2019. 7. 15.

○ 분산형전원 정의가 전기사업법에 신설(‘19.4.23공포, ’ 19.7.2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분산형 전원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산형전원의 범위(안 제3조의2)” 를 신설

1) 전기사업법에서 분산형전원의 세부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포함.

3) 분산형전원의 세부적 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산형전원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정책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6. 3.
- 마감일자 : 2019. 7. 15.

○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완화” (안 규칙 제 3조)

1)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이 국내투자와는 무관한 축소 요구로 현지시장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기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 7조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에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3) 이를 통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6. 3.
- 마감일자 : 2019. 7. 15.

○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한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6. 3.
- 마감일자 : 2019. 6. 17.

○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1)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안 제18조제11항 신설)

2)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3)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안 제24조제2항 신설)

4)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및 기간통신서

비스 요금 인하 신고(안 제28조 제6항 신설)

5)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안 제64조제5항 신설)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1)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법률 제14576호 부칙 제2조 개정)

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6. 4.
- 마감일자 : 2019. 7. 15.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5급 공채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 국가공무원의 부처간 전출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요건을 강화 하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를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보직시 다면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32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4)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 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2)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함

3)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나. 5급 공채 지방공무원 경채요건 기간 강화(안 제16조)

1) 5급공채 임용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과 동일하게 채용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다.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규정(안 제48조)

1)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시 임용 원칙을 규정하며,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라. 기타 제도 정비

1) 공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에 성가평가 결과 추가(안 제43조)

2)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수준 진단에 대한 법령 근거를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6. 4.
- 마감일자 : 2019. 7. 15.

○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은 법률의 목적, 상호의무원칙 및 취업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

나.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다. 제3장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4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불성

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제5장 보칙 및 벌칙은 취업지원의 유예·종료,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위임 및 위탁,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양벌 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

7.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4.
- 마감일자 : 2019. 7. 15.

○ 징계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특히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6. 5.
- 마감일자 : 2019. 6. 11.

○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19.7.1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68조)

1) 최근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19년도 구직급여 일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 ‘18.10.15 급여기초임금일액 개정(12만원→13만2천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고용보험법 정부안(‘18.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음(기입법예고기간: 2018. 10. 15. ~ 2018. 11. 26.:42일간)

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1)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련 신청 기간의 연장사유, 상 하한액 등에 관한 규정들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준용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 인상(안 제104조의2)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최초 1시간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6. 5.
- 마감일자 : 2019. 6. 19.

○ 고용보험법의 개정(7.1일 시행예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지급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안 제121조)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급여신청은 10일의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함

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위신청(안 제121조의2)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등(안 제122조)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법정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사유여부 등을 검토하여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123조의2)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급제한 등의 통지(안 125조)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의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을 규정함

바. 별지서식 개정(안 제121조 및 별지서식 제106호 등)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②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③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④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⑤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제정(안 제123조의2 및 별지서식 제107조의2)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정하고자 함

1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7. 18.

○ 토양정화업의 등록지를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지를 변경(안 제17조의4제1항 신설)

1)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17조의4제3항)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사항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7. 18.

○ 토양정화업의 등록지가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지 개선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및 토양정화업등록증 서식에 반입정화 시설 소재지란 등 추가(안 별지 제15·제16호서식)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7. 17.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표 1)

1)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함

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7. 17.

○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함(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 주요내용

가.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제9조의2)” 를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 : 별지8호의4서식

3) 경매 등으로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의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6. 27.

○ 전공의가 폭행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 등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사유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 (안 제6조의4 신설)

바.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7. 17.

○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감독 시스템 미비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입원 치료 연계, 조사 절차 개선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6.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6. 7.
- 마감일자 : 2019. 7. 17.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시('19.4.30) 고용영향평가 대상,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 가능한 정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그 외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

원회를 정비하여 지역 일자리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1) '09년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15조)

1) 지역일자리협의체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제23조)

1) 재정사업 중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가능한 정보(안 제25조 등)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마. 민감정보 처리(안 제43조의2)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건강, 범죄경력)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6. 11. • 마감일자 : 2019. 7. 22.

○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기준인 종사자 전임규정을 완화하여 유사 시설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전임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간시설에 대한 과도한 겸직 금지의무를 해제하여 일반 종사자에 대한 겸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종사자에 적용되는 전임 의무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한정함 (안 제6조 별표2)

1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6. 11.
- 마감일자 : 2019. 6. 24.

○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공표방법과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시 공고사항과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 시 알려야 하는 대상(안 제10조의5제1항)

1) 보호수 소유자 외 보호수가 서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자와 보호수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리 장을 고지대상으로 함

나. 보호수 지정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0조의5제2항)

1) 보호수 지정 시 지정 년월일, 법률적 제한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다.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안 제10조의5제3항)

1)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공고·고시방법 등을 정함

라.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10조의6)

1) 기술적 연구, 후계목 육성 및 보호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의 고시 등(안 제10조의7)

1) 보호수 지정해제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기준(안 제10조의8)

1) 보호수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피해 지원 기준을 정함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6. 11.
- 마감일자 : 2019. 6. 2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 입법예고(’19.4.15 ~ 5.27)에서 누락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대상 공공기관(제48조의9 제1항)을 규정하고 다시 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

1)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나.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1)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

1)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

1)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타당성 평가의 주체와 기준, 산림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을 규정함

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

1)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 모니터링의 시기와 내용 등을 규정함

바.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

1)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함

사.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

1)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

1)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6. 11.
- 마감일자 : 2019. 7. 22.

○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 주요내용

가.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1)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나. 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2)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마.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1)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를 막고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 취소 기준을 4회차 처분에서 2회차로 변경

2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6. 11.
- 마감일자 : 2019. 7. 22.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 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개정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11. • 마감일자 : 2019. 7. 2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제1항이 개정·공포(법률 제16382호, 2019.4.23.)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6조제4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영 제21조의3 신설)

2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12. • 마감일자 : 2019. 7. 22.

○ 공장 주변·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또는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처리 등 환경보건 증진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환경보건과 오염원 관리를 위한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할구역 내 공장 등 사업장의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를 제한하는 등 조사를 내실화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은 환경성질환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성이 확인된 질환에 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신종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 관리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2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6. 12.
- 마감일자 : 2019. 7. 26.

○ 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 편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대리인 선임관련 규정 명확화, 물품목록 고시와 동일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6. 12.
- 마감일자 : 2019. 7. 22.

○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12.
- 마감일자 : 2019. 7. 22.

○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및 지원범위 확대,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신산업 특례 도입 등 국가 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 삭제, 민간제안사업 제도 도입 등 스마트도시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88호, 2019. 4.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시, 구체적인 사업 종류, 추진방식, 지원사항 등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업무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업무별 위탁 대상기관 제시(안 제33조의2 신설)

라. 법률상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계획가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 위촉 절차, 운영 등 구체화(안 제35조)

마.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 종류 제시(안 제36조제2항)

바. 국가시범도시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포함(안 제40조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사항을 구체화(안 제40조의3 신설)

아.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대면적, 주거기능의 연면적의 최대한도 등 완화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6. 13.
- 마감일자 : 2019. 7. 23.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

한 엄정대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포함)’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 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활설화 및 소극행정 근절 (안 제38조의4, 제34조, 제27조)

1) 업무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중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특별승진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2)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한다)’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

3)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필수보직기간 도과 전 부서 이동을 희망한 경우’를 규정

나. 근속승진 개선 (안 제33조의2)

1) 근속승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를 추가하여 적극행정 인센티브 명확화

2) 11년 이상 재직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30%에서 40%로 확대

다. 보직관리 고려 기준에 성과평가 추가(안 제7조)

1) 보직관리 기준 중 ‘공무원의 인적 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포함)를 추가

라. 5급 공채 공무원의 전출 제한기간 신설(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나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마.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 과목 통일(별표 8)

1) 공업직렬 가스직류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차과목을 같은 직렬 다른 직류와 일치시킴

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6. 13.
- 마감일자 : 2019. 7. 23.

○ 공직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시 승급제한기간 가산(안 제13조)

1) 승급제한기간 6개월 가산 사유에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인한 징계를 추가하고자 함.

29.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9. 6. 14.
- 마감일자 : 2019. 7. 24.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음주운전 경각심 확산을 위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자 함(안 제14조)

30.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6. 14.
- 마감일자 : 2019. 7. 24.

○ 불법 폐기물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 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 요건을 강화하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 등이 원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까지 신속하게 결정함.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14.
- 마감일자 : 2019. 7. 24.

○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

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게 영상을 기록하도록 규정

다. 분실·도난·훼손방지 등을 위해 대수·위치·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라.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 또는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일부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14. • 마감일자 : 2019. 7. 24.

○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제공 기준을 마련

나. 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6. 14. • 마감일자 : 2019. 7. 2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1)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1) 법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규정(안 제58조제1항)

1) 법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종결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결사유로 추가함

라.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5조제1항제7호, 제59조, 제60조)

1) 이 영에서의 ‘조사기관’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임을 명시하고, 송부 대상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하며, 송부사건의 처리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이첩사건과 통일시킴

마.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

1)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바.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67조의2)

1)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별표 1)

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아. 포상금 지급 사유 정비(안 제71조)

1)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삭제함

자.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72조)

1)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포함시켜 부패행위신고자의 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킴

차. 구조금 산정기준 등 신설(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1) 법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함

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74조)

1)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정비함

타. 보상금의 환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83조)

1) 법 개정으로 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법 제70조의2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파. 국민권익 향상에 관해 포상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88조의3)

1) 법 제81조의3에서 위임한 포상 사유 등을 구체화함

하.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3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6. 17.
- 마감일자 : 2019. 7. 27.

○ 국공립연구기관·대학·특정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및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

7조제3호 신설)

35.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6. 18.
- 마감일자 : 2019. 7. 29.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 징구를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 주요내용

가.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규정 삭제(제14조 제1항 제1호)

3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6. 20.
- 마감일자 : 2019. 7. 30.

○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37.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1.

○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제공이 필요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관리절차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 기술지원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1) 환경부장관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생활악취배출사업장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9조)

1)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관리업무 위임기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추가

3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1.

○ 기술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절차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13조의2~제13조의5)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확대

39.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0.

○ 재해구호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확대 (안 제3조)

1)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나. 임시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1) 매년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40.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0.

○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의3)

1)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일부 수정 (안 별표1)

1) 응급의약품의 특정 주성분으로 한정한 규정, 제품 예시 등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1.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피의자 국선변호의 범위를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0조의5제2항

부터 제4항까지)

1) 검사 · 사법경찰관은 미성년자 ·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및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단,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선임불원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2)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 석방 △ 별도 변호인 선임 △ 구속영장 청구 △ 체포적부심 청구 시 즉시 상실

4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1.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종합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1)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1)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기간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고,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 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4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1.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등을 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 항목에 포함시켜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 및 매연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하며,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를 자율화하여 수리검정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 또는 안전기준 위배를 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 항목에 추가(안 제80조제2항)

1)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차량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부적합 판정 항목에 추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배출가스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8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에 한해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34조)

1) 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등록된 정비업자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정비업자가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작업의 경우에도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라. 하향등 전조등시험기에 대한 정밀도검사기준 신설(안 별표12)

1) 자동차검사 기준 중 전조등 검사기준이 2020년부터 상향등검사에서 하향등검사로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전조등시험기의 정밀도검사 기준도 상향등검사기준 외에 하향등검사기준 신설 필요

마.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도 매연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16 제2호 및 안 별표18제1호)

1) 종합검사시에는 매연 포집시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정기검사시에는 매연 포집시설이 없어 정기 검사 중에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정기검사시에도 매연 포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자율화(안 별표30 및 안 별지 제59호서식)

1)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리검정수수료에 대해서만 3,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다른 택시미터 검정수수료인 제작검정수수료 및 사용검정수수료와 같이 검정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자율화하고자 함

4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31.

○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3호)

1)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일부 생략 검사 등 자

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45.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8. 1.

○ 학생 시기의 건강문제와 건강생활 실천행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학교 교육 및 생활속 실천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평생 건강유지 및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 따라서 학생들의 질병양상 및 건강행태 변화, 학교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문진항목 수정·보완, 건강검사 시기 조정, 용어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의 실효성 제고(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1) 현행 건강검진 문진 항목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일원화되어 있어, 검진항목과 관련성이 없는 건강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을 분리하고, 문진항목은 실제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도록 건강문제 파악 중심으로 수정하여 문진을 통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상세한 상담을 유도함

나.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 시기의 구체화(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의2제3항)

1)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행태 조사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연중 실시되는 학교의 경우, 검사결과를 활용한 학교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예방 지도에 어려움

2) 매 학년도가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방법 개선(안 제10조제4항, 제5항)

1)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경우 시력 및 구강검진 결과, 혈액검사항목 외에는 유병률이 매우 낮아 건강정책에 활용도가 낮음에도 모든 검진결과 통계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2) 신체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결과만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항목을 정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업무부담 경감

라. 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 건강검사 관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3조)

1)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에 대해 초·중·고생 검진 규정을 준해서 실시하고, 대학생은 별도의 방법으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이후「유아교육법」이 개정(‘10.3.24)되어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19.1.1부터는 대학생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이 이루어지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동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마. 신체의 발달상황(비만) 판정기준 개선(별표1)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체중(kg)/신장(m)2) 산출방식과 신장별 표준체중 대비 상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방식을 병용하고 있어 두 방식 간 판정결과의 차이 발생

2) 산출방식에 따른 결과값 차이로 인한 비만지표 혼선방지를 위해 비만도 판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산출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반영하여 성장도표비만 판정기준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단일화함

바. 건강검진 항목 개선 (제5조제1항, 별표2)

1) 질병양상, 의료여건 변화,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용성이 줄어든 항목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검진항목 추가

사. 용어 정비 및 서식 수정 등

1) 구강검진항목 중 ‘치주질환’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인 ‘잇몸병’을 병기하고(서식 제1호의6), 일본식 용어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함(별표 2)

2) 서식 수정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5서식, 제1호의6서식, 제2호서식)

3) 서식 삭제(별지 제3호 서식)

아. 그 밖에 관계부처명, 인용조항 자구 수정

46.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8. 1.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

4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6. 21.
- 마감일자 : 2019. 7. 8.

○ 국방부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병과 복무기간이 동일한 의무경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축하여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및 병과의 형평성을 제

고를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이경·일경·상경’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경의 복무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2항)